인천광역시 중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	의	장
결				
_				



제 1349 호 2023년 8월 16일 수요일

차 례

공 고

회				
람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: 홍보체육실

공 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308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16일

인천광역시중구청장

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,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,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4조)
- 나.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6조)
- 다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사항(2023. 3. 14. 시행)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(안 제7조)

□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**2023년 9월 5일(화)**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: 세무1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(세정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▷ 주 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(관동1가)

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 (세정팀)

▷ 전 화: 032)760-7232 [FAX 032)760-7239]

▷ 제출서식 : 별첨 서식

□ 공청회 개최 : 개최계획 없음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2023년 12월 31일"를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조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"를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"로,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금액"은 다음과 같다.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자동이체"를 각각 "자동납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)「인천 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	제4조(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)
제6조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(각용어의 뜻은「지방세법」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)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	제6조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</u>
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「지방세기본법」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「지방세징수법」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이체 방식"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	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금액"은 다음과 같다.

현 행	개	정	안	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달하거나 <u>자동이체</u> 방식에 따른 달신청한 경우: 고지서 1경 2. 전자송달 방식과 <u>자동이체</u>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1,600원	남부만을 신청 1 다른 납부만을 <u>자동</u> 납 상당 800원	 - <u>+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	-)		

관계 법 규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-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<u>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, 2021. 6. 8.>
 - 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-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- ② ~ ⑧ (생 략)
- 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「지방세기본법」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송달 방식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자동납부 방식"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17. 12. 26., 2021. 12. 28., 2023. 3. 14.>
 - 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**자동납부 방식**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- 2. 전자송달 방식과 **<u>자동납부 방식</u>에**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- ② ~ ③ (생 략)

□ 지방세징수법

- **제23조(납부의 방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<개정 2023. 3. 14.>
 - 1. 현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2. 「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
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(이하 "지방세수납대행기관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 과금서비스

다.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「지방세기본법」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 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납부 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3. 24., 2023. 3. 14.> ③ ~ ⑤ (생 략)

제24조(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) 삭제 <2023. 3. 14.>

□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권장시설"이란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의 문화시설과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을 말하고, "준권장시설"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(이하 "문화지구"라 한다)의 보존·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말하며,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12.5.31, 2015.11.23.>
- 2. ~ 3. <생략>

제3조(문화지구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
- 2. ~ 4. <생략>
- ② <생략>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~ 6. <생략>
- 7. "도시·구계획시설"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·구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- 8. ~ 20. <생략>

제5조(도시·군계획 등의 명칭)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시인 경우 도시·군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, 도시·군관리계획, 도시·군 계획시설,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, 도시·군계획사업 및 도시·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"도시계획", "도시기본계획", "도시관리계획", "도시계획시설", "도시계획시설사업", "도시계획사업" 및 "도시계획상임기획단"으로 한다.

② ~ ③ <생략>

- 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이하 "도시·군관리계획결정"이라 한다)이 고시되면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7. 16.>
 - ② 시장(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)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(이하 "지형도면"이라 한다)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·고시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7. 16.>
 - ③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도지사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 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6.>
 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38조의2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(植生)이 양호한 산지(山地)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>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2023. 8. 16. 수요일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	검 토	구 분	유	무
검토사항	 행정규제, 물 조직 및 예 주민의 권료 	리 및 이익침해여부 セ도자료) 반영여부		
		부서별(실·과) 의견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	내용

,, 10 10 1

[주민용]				
	주민 의견수렴서			
	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 명	생년월일			
주 소	연락처			
의견제출 내용				
	제출일자 : 년			
	제 출 인 :	(인 또는 서명)		